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정관

제정 2013.09.23.
개정 2015.03.23.
개정 2015.08.12.
개정 2019.08.14.
개정 2020.03.13.
개정 2020.07.23.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목적) 이 재단은 오페라의 육성 발전 및 문화예술진흥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창조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대구오페라하우스 위탁관리 운영
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운영
3. 오페라 제작 및 단체 지원
4. 오페라 관련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5. 오페라 관련 학술연구 및 자료관리
6. 오페라 관련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 및 대표) ①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 1명
3. 이사 12명 이내 [이사장, 대표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재단에는 대표를 둔다. 대표는 상근으로 하며,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08.12>

제7조(임원 및 대표의 선임)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② 임원(당연직 임원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3.23>

③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3.23>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가 된다.

1. 이사장
2. 소관국장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선임직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5.03.23>

⑥ 감사는 선임직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8.12>

⑦ 공개모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임직 이사는 시와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03.23>

⑧ 삭제 <개정 2015.08.12>

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03.23.>

제7조의1(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08.14>

1. 미성년자 <개정 2020.03.13>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3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03.13>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0.03.13>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03.13>
5. <삭제 2020.03.13>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9.08.14>

제7조의 2(임원의 겸직 제한) ① 재단의 상근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3.13.]

제8조(임원 및 대표의 임기와 해임) ① 선임직 임원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조속히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⑥ 제8조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08.14>

제9조(임원 및 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03.13>

② 대표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대표가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제7조 제4항의 당연직 이사 중 시의 소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3.1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⑤ 삭제 <개정 2015.8.12>

제3장 이사회

제10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대표,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1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대표가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 1인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3. 제9조제4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의 경우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다만, 정관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부동수인 때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2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3. 기타 친인척과 관련된 사항

제16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위 원 회 등

제17조(설치)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 ①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목적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2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제25조(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등기부등본 또는 잔액증명서 첨부) 1부
4.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제26조(임원보수의 제한) 재단 대표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6장 조직 및 정원 등

제27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집행기관의 조직 및 정원, 복무, 분장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직원의 임면) 재단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되, 재단 규정에 따라 대표가 임면한다.

제29조(예술단 운영) 재단은 오페라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시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정보공개

제31조(정보공개) 재단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23>

1. 정관
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3.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5. 기부금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8장 보 칙

제32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소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34조(광고) 법인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광고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및 정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 설립 후 그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설립재산) 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이사회 구성 전 최초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심의·제정하고 최초 이사회 개최 시 보고한다.

③ 재단의 최초 선임직 이사, 감사는 제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설립·운영계획」에 의거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 선임 전 재단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3년 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이사장이 집행하며, 이 경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시 회계절차를 준용하여 시 공무원이 수행한다.

⑤ 재단 설립 전 최초의 조직 및 정원, 분장업무는 제27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설립·운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며 이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2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8.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전 선임한 비상근 대표의 임기는 종전대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대표 또는 상임이사(관장)”으로 표기된 문구는 “대표”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표기된 문구는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한다.

부 칙 <2019.08.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전 선임된 선임직 임원 및 대표의 임기는 종전대로 한다.

<별표 1>

재 산 총 괄 표

재산구분		수량(㎡)	금액(가액)	설립년도 수입액	취득원인	비 고
기본 재산	현 금		일백만원		대구시 출연	
	주 식	주				
	채 권					
	동산소계		일백만원		대구시 출연	
	건 물					
	전					
	답					
	대 지					
	임 야					
	부동산소계					
	기 타					
	합 계			일백만원		대구시 출연
운영 재산	현금		사억육천만원		대구시 출연	
	전	㎡				
	답	㎡				
	임야	㎡				
	합 계			사억육천만원		대구시 출연
총 계			사억육천일백만원		대구시 출연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구분 (지목별)		수량㎡	금액(가액)	소 재 지	비 고
동산	현 금		일백만원		시출연금
	주 식	주			
	채 권				
	소 계		일백만원		시출연금
부동산	건 물	㎡			
	전	㎡			
	답	㎡			
	임 야	㎡			
	소 계				
기 타					
총 계			일백만원		시출연금